[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3. 4. 24.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① 관세범죄 양형기준 의결
②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의결
③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④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⑤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53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관세범죄 양형기준 심의·의결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범죄의 양형기준 추가 여부(소극)

나) 벌금형 및 추징액 산정기준 보완 여부(소극)

다) 양형기준 대유형 분류를 조세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일반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범죄로 수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라) 무신고수입 등(대유형 2)의 각 중유형의 각 소유형 1의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 하향 조정 여부(소극)

마) 관세포탈(대유형 1)의 소유형 1의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하향 조정 여부(소극)

바) 무신고수입 등(대유형 2)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의 삭제 또는 수정 여부(소극)

사) 관세포탈(대유형 1)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 세분화 또는 수정 여부(소극)

아) 관세포탈(대유형 1)의 일반감경인자인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의 삭제 여부(소극)

자) 무신고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대유형 2의 중유형 가)의 일반감경인자인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및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여부(소극)

차) 관세범죄에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양형인자로 추가 여부(소극)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위 쟁점에 관하여 현행 양형기준안(2022. 12. 5.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무신고수출 등(대유형 3)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와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의 삭제 여부(소극)

- 위 양형인자들을 존치하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위 양형인자들을 삭제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2) 관세포탈(대유형 1)의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의 삭제 여부(적극)

- 위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견이 일치함

3) 무신고 수입 등(대유형 2)의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의 삭제 여부(적극)

- 위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견이 일치함

다. 양형기준 시행 시기

○ 관세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3. 7. 1.로 정하여, 202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5.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심의·의결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소극)

나)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소극)

다)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 여부(소극)

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소유형1 중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같은 항 제11호(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훼손 등) 위반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소유형 2)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 여부(소극)

마)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훼손 등)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여부(소극)

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소유형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과 소유형 2(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를 각각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소극)

사)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소유형 2 중 민감정보 침해, 고유식별정보 침해를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소극)

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대유형 2),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 3)의 각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소극)

자)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 중 소유형 1(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권고 형량범위를 더 넓고 유연하게 규정할지 여부(소극)

차)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이라는 감경인자 삭제 여부(소극)

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대유형 2)의 소유형 2(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금융

통 등)의 감경인자 중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 삭제 여부(소극)

타)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범행 등 범행 수단에 관한 특별감경인자 추가 여부(소극)

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의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에서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삭제 여부(소극)

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 삭제 여부(소극)

거)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및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삭제 여부(소극)

너)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 3) 중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세분화 여부(소극) 및 행위태양 중 ‘처리’의 세분화 여부(소극)

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의 특별감경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 중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삭제 여부(소극)

러)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 및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대유형 3)의 특별감경인자인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삭제 여부(소극)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현행 양형기준안(2022. 12. 5.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대유형 1)의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에 경제적 이익에 관한 규정 추가 여부(소극)

-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위 정의규정에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또는 ‘범행 결과 제거를 대가로 한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다. 양형기준 시행 시기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3. 7. 1.로 정하여, 202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6. 교통범죄 양형기준 심의·의결

가.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선고유예 포함) 선고 시 관련 법령이나 사내규범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벌금형 권고사유로 추가 여부(소극)

나) 치상 후 도주(대유형 2의 소유형 1)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향 여부(소극)

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범위 추가적인 상향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 여부(소극)

라)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의 소유형 2 내지 4의 권고 형량범위 중 각 기본영역을 중첩시킬 것인지 여부(소극)

마) 양형인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수정 여부(소극) 및 지적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감경인자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바)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의 특별감경인자인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대리운전 등의 사유를 삭제하고 '짧은 운전거리'로 한정할지 여부(소극)

사)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의 특별가중인자인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의 정의규정에 인명피해 추가 여부(소극)

아)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에서 '사고현장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소극)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위 쟁점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3. 2. 13.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의 소유형 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형량 강화: 상한을 1,500만 원 → 1,700만 원으로 상향

나)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양형기준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번호 부기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현행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함

다.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교통사고 치상(대유형 1 중유형 가의 소유형 1)의 가중영역, 교통사고 치사(대유형 1 중유형 가의 소유형 2)의 기본영역, 위험운전 치상(대유형 1 중유형 나의 소유형 1)의 기본영역, 어린이 치상(대유형 1 중유형 다의 소유형 1)의 기본영역, 치상 후 도주(대유형 2의 소유형 1)의 기본영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추가 여부(소극)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벌금형 선택 사유에서 제외하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벌금형 선택 사유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2) 교통사고(대유형 1) 및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이 결합된 범행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소극)
   -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결합 범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형종 선택에 관한 서술식 기준에 '(다만 음주운전·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라는 괄호 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이 결합된 범행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3) 교통사고 치사(대유형 1 중유형 가의 소유형 2)의 기본영역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벌금형 선택 사유에서 삭제할지 여부(소극)
   - 처벌불원에 더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포함하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삭제하고 처벌불원만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규정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4)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에서 형종 선택의 기준 및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가 되는 동종전과 기간의 범위
   - 5년 이내인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10년 이내로 수정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5)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의 소유형 4, 5의 각 가중영역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술식 규정을 유지할지 여부(적극)

- 서술식 규정을 두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는 서술식 규정을 삭제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6) 음주측정거부(대유형 3의 소유형5)의 권고 형량 범위

-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음주측정거부의 감경영역 상한, 기본영역의 징역형 상하한 및 벌금형 하한, 가중영역의 하한을 각각 상향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7) 형종 선택의 서술식 기준 내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

-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견해 일치(밑줄 부분)

▣ 일반 교통사고(대유형 1의 중유형 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8월 -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의 중유형 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700만 원 - 1,500만 원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대유형 1의 중유형 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1)	- 8월 100만 원 - 200만 원2)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3)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1)	- 8월 200만 원 - 400만 원2)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3)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2)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2)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3)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2)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2)	2년6월 - 4년4)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2)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2)	1년6월 - 4년4)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8) 교통사고(대유형 1)의 각 중유형과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유지할지 여부(적극)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각각 삭제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라. 양형위원 제출 추가 안건 심의·의결

1) 교통사고(대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특별가중인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정의규정 수정 여부(소극)

-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견해 일치)

2) 교통사고(대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소극)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지 않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마. 양형기준 시행 시기

○ 교통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3. 7. 1.로 정하여, 202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7.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양형기준 수정안 유지)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3. 2. 13.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나. 양형기준 시행 시기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3. 7. 1.로 정하여, 202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